

## [상세보기 #2] 지역인재 상세내역

### □ 비수도권 지역인재 상세내역

#### 1. 비수도권 지역인재의 범위

- 비수도권지역인재 : 비수도권 지역인재는 대학(전문대학 포함)까지의 최종학력(대학원 이상 제외)을 기준으로 서울·경기·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(예정)·중퇴한 자 또는 재학·휴학중인 자(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, 기획재정부 통합공시 기준을 따름)

#### 2. 비수도권 지방대학의 범위(공공기관 통합공시 매뉴얼)

##### 가. 지방대학에 포함되는 대학

- (1) 본교가 서울·경기·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「고등교육법」 상의 ‘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기술대학, 각종학교’
- (2) 「고등교육법」 제24조 상의 분교로서 서울·경기·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
  - \* (예시) 단국대 천안캠퍼스, 동국대 경주캠퍼스, 상명대 천안캠퍼스, 연세대 원주캠퍼스, 홍익대 세종캠퍼스 등
- (3)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서울·경기·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역대학
- (4) 「한국과학기술원법」 제14조 제3항에 의해 설치된 과학기술대학

##### 나. 지방대학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(예시)

- (1) 본교가 서울·경기·인천에 소재하는 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·경기·인천 지역대학
- (2)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
- (3) 사이버대학, 디지털 대학 등 「평생교육법」 상의 평생교육시설
- (4) 외국대학 및 외국대학의 국내분교

#### 3. 그 외의 비수도권 지방인재에 해당하는 경우(공공기관 통합공시 매뉴얼, 인사혁신처 균형인사지침)

- (1)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
- (2)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로서 경찰대학·사관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
- (3) 대학원 및 사이버·디지털 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또는 독학사, 학점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,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당해 학력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
- (4) 2개 대학 이상 재학 중인 경우는 아래의 기준에 따름
  - ① 서울소재대학과 지방대학을 모두 졸업한 경우
    - 지방대학 졸업 후 다시 서울소재대학 졸업 : 비수도권 지역인재 해당
    - 서울소재대학 졸업 후 다시 지방대학 졸업(예정) : 비수도권 지역인재 해당
  - ② 대학졸업 후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
    - 지방대학 졸업 후 다시 서울소재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 중 : 비수도권 지역인재 해당
    - 서울소재대학 졸업 후 다시 지방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 중 : 비수도권 지역인재 비해당
    - ※ 단, 지방대학 졸업 후에는 지방인재에 해당
  - ③ 대학중퇴 후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
    - 지방대학 중퇴 후 다시 서울소재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 중 : 비수도권 지역인재 비해당
    - 서울소재대학 중퇴 후 다시 지방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 중 : 비수도권 지역인재 비해당
    - ※ 단, 지방대학 졸업 후에는 지방인재에 해당

④ 대학 졸업 후 대학원을 재학 또는 졸업한 경우

- 지방대학 졸업 후 서울소재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: 비수도권 지역인재 해당
- 서울소재대학 졸업 후 지방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: 비수도권 지역인재 비해당

《 예 시 》

1.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소재 대학교 1학년 재학·휴학중인 자 → 비수도권 지역인재 아님
2.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충청소재 대학교에서 재학·휴학 중인 자 → 비수도권 지역인재
3. 전남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자 → 비수도권 지역인재
4.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, 사이버대학, 디지털대학, 외국대학 및 외국대학의 국내분교 → 비수도권 지역인재 아님

□ 경남 이전지역인재 상세내역

1. 경남 지역인재 개념

◦ (정의) 본사 이전지역(부산·울산을 제외한 경상남도)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(대학원 제외) 졸업(예정)자. 단,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(예정)인 자는 제외(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름)

※ 대학 졸업예정자의 범위 : '18.8월까지 졸업예정인 자에 한하여 인정하며, 4년(4년제의 경우 4년=8학기, 5년제의 경우 5년=10학기, 전문대학의 경우 2년=4학기)이상 등록하고, 최종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해서 졸업학점에 도달된 자로서,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에 따라 졸업예정자로 인정되어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야 하고, 공사에서 요구하는 시점에 제출 할 수 있어야 함.

※ 이전지역 : 본사 이전지역인 경상남도를 말하며 부산, 울산을 제외함.

2. 경남소재 지방대학의 범위(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) : 본사 이전지역에 소재한 아래의 학교

가. 『고등교육법』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하며,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원격대학(사이버대학은 제외), 기술대학, 각종학교

\*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역대학은 이전지역 학교에 포함

나. 특별법으로 설치된 다음 학교는 졸업 후 임용이 보장되고 일정기간 복무의무를 지며 국고에서 학비를 부담하므로 소재지에 관계없이 제외

- (1) 『경찰대학 설치법』에 의한 경찰대학(경기)
- (2) 『사관학교 설치법』에 의한 육·해·공군사관학교(서울·경남·충북)
- (3) 『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』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(대전)
- (4) 『육군3사관학교 설치법』에 의한 육군 제3사관학교(경북)

다. 『고등교육법』 제24조상의 "분교"인 경우는 분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함

예시

-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: 이전지역학교에 해당함
  -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는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
-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 : 지방학교에 해당하지 않음
  -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는 고등교육법 제 24조상의 분교가 아님

라. 『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』에 따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및 「광주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

마. 『초·중등교육법』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

※ 외국학교 및 지방에 있는 외국학교의 분교는 제외

3. 이전지역인재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의 범위(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)

(1) 다음의 이전지역대학 졸업(예정)자

- ① 『고등교육법』 상의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소정의 학교와 과학기술 대학을 졸업한 경우
-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경우 이전지역에 소재한 소정의 학교에서 전 기간을 수강하고 졸업한 경우

(2) 이전 지역인재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아래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또는 열거된 학력을 보유한 사람은 해당 학력을 제외한 최종 학력이 이전지역 학교일 경우

- ① 「고등교육법」, 특별법 등 교육관계 법령에 규정된 대학원
- ② 「고등교육법」에 규정된 사이버대학
- ③ 「평생교육법」에 규정된 평생교육기관
- ④ 「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의한 독학학위 취득자
- ⑤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의한 학위 취득자

(3) 학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

- ① 수도권 소재 학교 및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소재 학교가 이전지역으로 이전한 경우, 이전하는 시점 이전 졸업자는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
- ② 지방소재 학교가 수도권으로 이전하였거나 이전지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, 이전하는 시점 이후 입학자는 수도권 또는 이전지역 밖의 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것으로 보아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

< 예 시 >

<이전지역 대학교와 타 지역 대학교를 모두 졸업한 경우>

-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서울소재 대학 졸업 : 해당
-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 졸업(예정) : 해당

<대학졸업 후 다른대학에 재학중인 경우>

-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타 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중 : 해당
-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이전지역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중 : 비해당

<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수강지역대학을 변경한 경우>

- 타 지역 대학에서 수강하다가 이전지역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 : 비해당
- 이전지역대학에서 수강하다가 타 지역 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 : 비해당

<대학중퇴 후 다른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>

- 이전지역 대학 중퇴 후 다시 타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중 : 비해당
-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중 : 비해당

※ 다만, 이전지역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이전지역 인재에 해당

<경찰대학·사관학교를 중퇴한 경우>

- 이전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·사관학교 중퇴자 : 해당
- 타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·사관학교 중퇴자 : 비해당

<대학 졸업 후 대학원을 재학 또는 졸업한 경우>

-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타 지역 소재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: 해당
- 타 지역 소재 대학 졸업 후 이전지역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: 비해당